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3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1. 제안이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병역명문가 우대의 범위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

다. 병역명문가 우대 증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 신설(안 제7조 제2항 및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우대상자”를 “병역명문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를 “병역명문가(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가문 포함)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로,

“감면 해 줄” 을 “감면할” 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병역명문가</u>”란 3대(조부로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u>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u>」(병무청훈령 제1564호, 이하 “<u>운영규정</u>”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u>예우대상자</u>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p> <p>〈<u>신 설</u>〉</p> <p>제7조(우대) ① 군수는 <u>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있는 시</u></p>	<p>제2조(정의) ----- -----.</p> <p>1. “<u>병역명문가</u>”란 「<u>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u>」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① ----- ----- 병역명문가-----.</p> <p>② <u>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u></p> <p>제7조(우대) ① ---- <u>병역명문가(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가문 포함)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u></p>

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해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

----- 감면할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 「병역법」(2025.3.18. 일부개정, 2025.9.19. 시행)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2025.12.30. 타법개정, 2026.1.2. 시행)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제87조·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병역명문가의 예우 적용 대상을 관외 거주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까지 확대하
며,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례 시행 시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병역명문가의 예우 적용 범위를 확대·정비하는 내용으로, 이용료·입장료·주
차료 등의 감면 적용 여부는 각 시설의 운영 현황, 이용 실태, 감면 대상자의
이용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관외 거주 병역명문가의 실제 이용 규모와 시설별 감면 적용 범위가 사전
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판단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곽 동 환 (☎ 2057)